

등록번호	보건위생과-12042
등록일자	2015.6.22.
결재일자	2015.6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건행정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
이영화	김영규	박정숙	06/22 이준영
협 조	지역건강과장 김선찬		

시간외근무명령 **상한시간 예외 적용 계획**



서대문구
보건위생과

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적용 계획

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제 유지에 따라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함.

I

추진근거

- 『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제15조 제4항 제2호(시간외근무수당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 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
- 『메르스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 유지 협조 요청』
 - (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4294(2015. 6. 5))

II

운영개요

-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예외 적용 대상
 -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 8명 및 보건위생과 차량업무담당 3명
- 적용시기 :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시부터 소급적용
- 인정기간 : 비상근무 해제시까지
- 인정시간 : 최대70시간
- 예외 인정범위
 -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가능하며, 이 경우 이를 포함하여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
Ⅲ

운 영 기 준

- 시간외근무 확인 : 근무자 본인의 출·퇴근 지문인식
 -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
- 가족사랑의 날 시간외 근무명령 인정
 - 재난·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자 근무명령 가능
- 시간외근무 승인 절차
 - 사전 근무명령을 원칙,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근무명령을 득하지 못한 경우, 그 사유를 명시 후 사후 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여야 함.
 - 사후결재 시 인사팀장의 “심사” (결재구분) 승인 필수
 -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하여 근무일 다음날(근무시간 반영 후) 내역보고 실시(부서장 결재)

Ⅳ

행 정 사 항

- 지역건강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조서 및 증빙자료 제출
 - 비상근무자(감염병관리팀 8명) 초과근무내역관리(새울) 제출
: 결재상태(결재완료), 자료구분(전체)